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242
------------	-----

2022년 12월 19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 안 자 : 소영철 의원 외 25인

나.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7일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라. 상정일자

- 제315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2년 12월 19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영철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시 마을버스는 '20년 동 조례 개정을 통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재정지원금 관리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된 외부회계 감사를 받고 있음
- 다만, 독립된 외부회계감사로 인해 영세한 마을버스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외부회계 감사 소요비용지원에 대한 단서 조항 추가를 통해 마을버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외부회계감사를 서울시에 보고할 경우 시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 시장은 재정지원 및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음(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참조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2. 10. 27. ~ 2022. 10. 31.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계기관 의견1)

○ 제출의견 : 동의

- 현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나,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로 운영됨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음
- 반면 마을버스의 경우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어 시내버스보다 더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 회사 자부담으로 외부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경영부담을 호소해 왔음 (매년 300만원 정도)
- 따라서, 마을버스의 외부회계감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부담을 일정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안 제3조의2)
- 또한, 지금까지 마을버스의 재정지원 및 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마을버스 회사는 없었으나 향후 자료제출 거부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지원 중단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안 제7조)

4.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가 재정지원금 적정사용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되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시'에는 시장이 회계감사 시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정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에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외부회계감사시행에 따른 지원 관련(안 제3조의2)

- 동 개정조례안 제3조의2는 재정지원을 받은 마을버스 사업자가 '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는 한편 '마을버스사업자가 독립된 외부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 시'에는 시장이 회계감사 시행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2)에 따르면

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

마을버스 운수회사는 외부회계 감사의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외부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토록 함으로써 마을버스 회사의 재무건전성 향상 및 재정지원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고,

시내버스의 경우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대상이 아님에도 서울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조례 개정³⁾을 통해 외부 회계감사를 받고 있으며, 서울시와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이 체결한 특별합의문 제2조에서 “재정지원대상사업자는 반드시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해 회계감사를 받도록” 합의⁴⁾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년 6월 현행 조례 제3조의2 규정 신설이 가결⁵⁾되었음

- 동 개정조례안의 전단부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을 “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개정함에 따라 “회계감사 결과”

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미만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미만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3) '19년 4월 제286회 임시회

4) 서울시-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특별 합의문('20.5)

5) '20년 6월 제295회 정례회

가 아닌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 결과”를 서울시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임

마을버스 사업자가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 결과”를 보고할 경우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 결과”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세부규정이 없어 보고내용이 축소, 왜곡 및 부실화될 수 있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6)에서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작성한 재무제표를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한 보고서를 말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감사인의 감사결과인 “감사보고서”를 서울시가 확인·점검하기 어려워질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보완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동 개정조례안의 후단부는 마을버스 사업자가 외부회계감사 시행시 그 비용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점, 회계감사 비용 지원으로 마을버스 업계가 회계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다는 점, 시내버스의 경우 준공영제 운송원가에 반영하여 지급하고 있다는 점, 회계감사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금액⁷⁾이 비교적

6)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감사보고서”란 감사인이 회사가 제5조제3항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따른 감사의견을 표명(表明)한 보고서를 말한다.

7) 마을버스 1개 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추정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례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재정지원 제외 관련(안 제7조)

- 동 개정조례안 제7조는 서울시가 재정지원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범위에 재정지원금 정산보고를 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사업자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
- 현행 조례 제6조제1항8)에서는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 후 4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음
- 동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지원을 하지않도록 함으로서 서울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며

사업자 역시 재정지원금 정산 및 관련 증빙자료 작성과 관리에 더욱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8)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는 집행 후 4개월 이내에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가. 수정이유

- 마을버스 사업자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사항을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서 “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보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 이미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이 '20년 5월 합의문을 체결하여 재정지원 받은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내용을 현행조례와 같이 유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42
----------	--------

제안년월일 : 2022년 12월 19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수정이유

- 마을버스 사업자가 서울시에 보고하는 사항을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것”에서 “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 사용여부 결과를 보고하는 것”으로 변경할 경우 보고내용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고,
- 이미 서울시와 마을버스조합이 '20년 5월 합의문을 체결하여 재정지원 받은 사업자는 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고내용을 현행조례와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가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시장이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의2 중 “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여부”를 “회계감사를 받고 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의원발의안)	수정안(위원회안)
제3조의2(외부 회계 감사)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 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조의2(외부 회계 감사) ----- ----- ----- ----- <u>회계감사 등으로 재정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u> ----- ----. <u>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제3조의2(외부 회계 감사) ----- ----- ----- ----- <u>회계감사를 받고 그</u> ----- ----- ----. < 후단 개정안과 동일 >
제7조(지원 제외)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재정지원 및 평가를 위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지원 제외) ----- ----- <u>제6조</u> ----- ----- <u>평가, 정산보고</u> ----- ----- ----- ----- --.	제7조 < 개정안과 동일 >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자가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중 “제5조”를 “제6조”로, “평가”를 “평가, 정산보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